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KRX 한국거래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. 11. 25.(수) 증선위 회의 후

언론사 기자 등의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의결(2건)

-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(11.25.) -

[조치 개요]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 신진창)는 제21차 정례회의('26.11.25일)에서, (1) 본인이 **선행 매수한 주식에 대한 기사**와 관련하여 **보도 방향 설정, 보도 여부 결정** 등에 관여한 언론사 기자를 자본시장법상 **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**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(이하 '중수청')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의결하고, **언론사에 소속된 자**들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**호재성 기사 정보를 이용**하여 해당 **기사 보도전에 주식을 매매**하거나 **타인에게 이용**하게 한 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**약 50억원의 과징금**을 **부과**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 또한 (2) **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**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매매에 이용한 **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**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중수청에 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,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

◈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**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**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**내부자**가 **업무 등**과 **관련**된 **미공개중요정보**를 **특정증권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**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(자본시장법 §174①)를 말합니다.

◈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는 **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**와 관련하여 **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**하는 행위(자본시장법 §178①)를 의미합니다.

◈ 또한,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여부 또는 조건에 **중대한 영향**을 줄 수 있는 **정보를 직무상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** 또는 이를 **전달받은 자**가 해당 정보의 **공개 전에** 이를 **주식의 매매 등에 이용**하거나 **타인에게 이용하게** 하는 행위는 **시장질서 교란행위**(자본시장법 §178의2①)에 해당합니다.

[(1) A 언론사 기자 등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]

혐의자 중 1인은 기사보도 및 방향설정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본인이 선행 매수한 주식에 대한 **기사 보도를 지시**하거나 **직접 기사를 출고**하는 등 보도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**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**가 있습니다. 또한, 위 혐의자를 포함한 언론사 기자 등은 내부 기사보고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기자들의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을 통해 **보도 예정인 호재성 기사 내용을 미리 인지**하고 **주식매매에 이용**하거나 이를 **지인·가족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**하게 하였고, 이를 전달받은 지인·가족은 동 **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**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**시장질서교란행위**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< 사건 개요 >



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(단장 황선오)은 해당 혐의자들에 대해 **압수·수색** 등을 포함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, '23년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혐의자들의 위법행위를 확인·적발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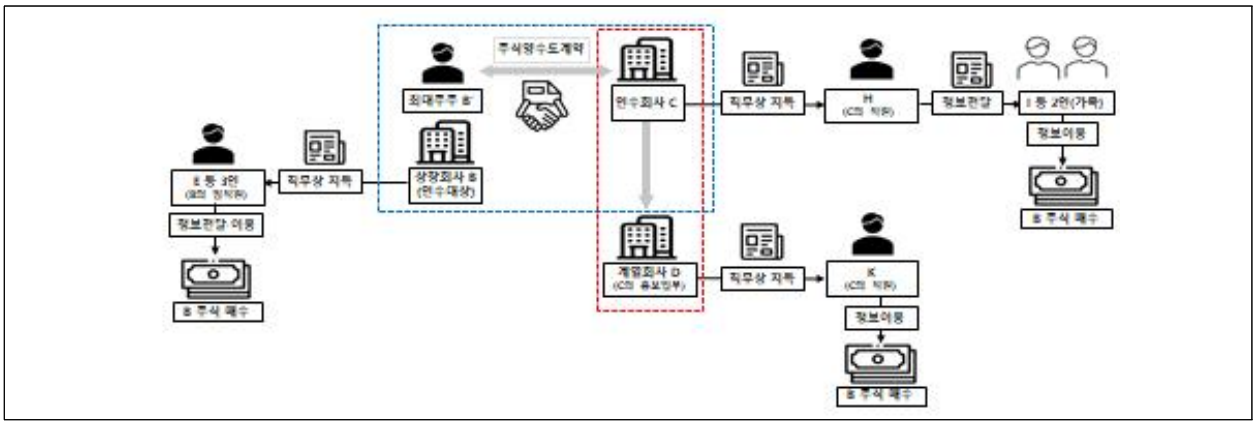
*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 이행 추진

[(2) 상장법인 및 인수회사의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]

상장회사 B사의 임직원 E,F,G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B사 **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계약** 관련 **미공개중요정보**를 매매에 **이용**하거나 **지인에게 전달**하여 약 1.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. 또한 E는 B사의 **임원으로 선임**된 이후 본인 계산, 타인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취득·처분하여 **소유상황 보고의무**가 **발생**하였음에도 **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**도 밝혀졌습니다.

한편, **B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C사의 직원 H**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C사의 B사 주식 인수에 관한 **미공개중요정보**를 **배우자 I**에게 **전달**하였고, 이를 전달받은 I는 **친인척 J와 공모**한 후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약 1억원 상당의 **부당이득**을 **취득**한 혐의가 있습니다. 그리고 **C사의 계열회사 D의 직원 K**는 C사의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**미공개중요정보**를 알게 된 뒤 이를 **이용**하여 약 2천 7백만원 상당의 **부당이득**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
< 사건 개요 >



[유의 사항]

상장기업의 **호재성 기사 보도**에 **관여한 언론사 종사자**가 그 기사정보를 **보도 전에 주식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**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이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(부당이득의 최대 6배)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**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** 직무상 알게 된 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**공개되기 전, 해당 정보를 이용**하거나 타인에게 **이용하게 하는 경우**, **시장질서 교란행위**에 해당하여 **과징금**(부당이득의 최대 1.5배에 상당하는 금액)을 **부과**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상장사의 최대주주, 대표이사, 임직원 등 **내부자**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**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**를 **거래에 이용**하거나 **타인에게 이용**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**1년 이상의 유기징역** 또는 **벌금**(부당이득의 최대 6배)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상장사의 **임원 또는 주요주주**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**5일 이내**에 **명의**와 **무관**하게

자기의 **계산**으로 **소유**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, 그 회사 주식의 **소유상황**에 **변동**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**변동일**로부터 **5일 이내**에 금융감독원에 **보고**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**1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3천만원 이하의 벌금**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**불공정거래 행위**를 예의주시하고, **적발된 위법행위**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**엄중 조치**함으로써 **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**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.
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, 아래 담당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
(1) 관련 :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, 금융감독원 조사3국
(2) 관련 : 금융감독원 조사2국

<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>

☞ **금융위원회**
- 인터넷 :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[참여마당 → 신고마당 → 불공정거래신고] 메뉴

☞ **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**
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[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증권불공정거래신고] 메뉴
- 전 화 : 1332

☞ **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**
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http://stockwatch.krx.co.kr)
- 전 화 : 1577-0088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종식	(02-2100-2600)
		담당자	서기관	김영민	(02-2100-2579)
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	책임자	과 장	정현직	(02-3774-8724)
		담당자	사무관	전양준	(02-3774-8964)
	금융감독원 조사2국	책임자	국 장 (대 행)	형남대	(02-3145-5653)
		담당자	팀 장	진원주	(02-3145-5658)
	금융감독원 조사3국	책임자	국 장	장정훈	(02-3774-8570)
		담당자	부국장	이민호	(02-3774-8550)
	한국거래소 신속심리부	책임자	부 장	이성훈	(02-3774-8798)
		담당자	팀 장	이승열	(02-3774-878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